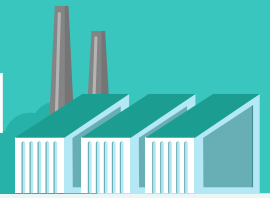


# '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제조·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사업 안내



## 1 사업개요

- ✓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점검·감독, 공단 및 민간위탁기관의 기술지도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유해·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

## 2 지원대상

- ✓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1. 50인 미만 중소기업장(건설현장 제외,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)
  2.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
  3.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

### 지원제외 대상

- |  |  |  |
|--|--|--|
| ✓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✓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| ✓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  |
| ✓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 (보조금 부정수급 등)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| ✓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기계·기구·설비 등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자·보조 지원 결정을 받은 자 | ✓ 당해연도 안전일터 조성지원, 건강일터 조성지원, 안전동행 지원사업,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 결정 사업장 |

✓ 근로자 미고용 사업장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기계·기구·설비에 대한 임대업 사업장 제외)

## 3 지원금액 및 절차

- ✓ 지원금액 :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,000만원까지(공단 판단금액의 70%, 당해연도 1회 지원)
- ✓ 지원절차



※ 신속지원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, 투자계획확인, 지급대상자 결정 및 통보 절차 생략 가능

## 4 신청기간 및 방법

- ✓ 기간 : '26. 1. 2. (금) ~ 자원 소진 시까지('26년 자원 272.4억원)
- ✓ 방법 : 산업안전포털(portal.kosha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- ✓ 온라인 신청 매뉴얼

산업안전포털  
(portal.kosha.or.kr)

지원사업 신청

안전일터조성지원  
(제조·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)

자료실  
문의 1544-3088

## 5 지원품목

- ✓ 지정품목 :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유해·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(33종)
- ✓ 자율신청품목 : 지정·관리품목 외 사업주가 사업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한 사고 예방 기능·성능이 확인된 품목  
(※ 현장확인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원이 불가함)



지원품목 확인하기

